[

2024113227

##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##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